



제429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64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혜련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25.
3. 회부연월일 : 2025.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무직원의 복무의 관한 사항이 각 학교법인의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학교마다 기준이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의 직원에 비하여 육아휴직 등 복무 관계에서 불리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그러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이나 국공립학교의 직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으므로, 복무 및 이에 따른 보수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및 제70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무직원의 휴직에 관해 현행법상 교원에게 적용되는 휴직 사유의 일부(「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 제7호, 제7호의2, 제9호), 휴직기간(「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사립학교법」 제59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 등에 휴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액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원의 휴직에 관해서는 제59조제1항제1호·제7호·제7호의2·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u><신설></u>	제70조의8(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휴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나. 현행 사무직원의 휴직에 관한 규정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관련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9조1)에 따라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혹은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사무직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휴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하고, 각 사립학교의 정관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고 있음.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휴직 근거 규정>

구분	사립		국·공립	
	육아휴직	돌봄휴직	육아휴직	돌봄휴직
교원	「사립학교법」 제59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사무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국립) 「지방공무원법」 제63조(공립)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구성

1) 「사립학교법」 제59조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다음으로, 휴직에 따른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²⁾이 아니어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각 사립학교 정관에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육아휴직수당 근거 규정>

구분	사립	국·공립
	육아휴직	
교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사무직원	근거 규정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1조(국립)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공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구성

2)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 검토의견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상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역시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각 사립학교 정관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이 사용하는 육아휴직과는 기간과 수당 지급면에서 차이가 있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육아휴직 비교>

구분	교원	사무직원
기간	3년 ³⁾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가능	1년 ³⁾ 이내(+6개월)
육아 휴직 수당	휴직 0~3개월 : 250만원 휴직 4~6개월 : 200만원 휴직 7개월 이후 : 160만원	각 사립학교 정관 외에 근거 규정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구성

실제로 사립학교 교직원(유치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비교³⁾해보면,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 교원은 1,533명으로 사학연금가입자 전체 교원의 1.99%가 육아휴직을 사

3)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입법조사처, 2025.4.7.)

용하였음. 이에 비해 2024년 육아휴직 사용 직원 수는 85명으로 전체 직원의 0.7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의 이러한 미비점이 그 원인중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⁴⁾ >

(단위 : 명, %)

구분	교원 수	사용자 수	비율	직원 수	사용자 수	비율
2019	92,017	1,563	1.70	12,435	67	0.54
2020	88,531	1,541	1.74	11,709	85	0.73
2021	85,253	1,567	1.84	11,242	84	0.75
2022	82,632	1,612	1.95	11,119	96	0.86
2023	79,941	1,588	1.99	10,989	94	0.86
2024	77,135	1,533	1.99	10,741	85	0.79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 이에 개정안은 ①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사유 중 자녀 양육 등⁵⁾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그 기간 또한 사립학교 교원과 관련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② 국가나 지방자

4) 대학교 및 대학병원은 제외함

5)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육아휴직 사용 등에 있어서의 사무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립학교 교원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또한 교육활동의 지원이라는 공적인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사용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 마련이 필요한 점 등의 측면에서 개정안은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기준 교원의 수는 77,135명이고, 사무직원의 수는 10,741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원이 상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개정안의 심사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 유형별로 재원 확보체계가 상이하여 이로 인한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의무 또는 무상교육에 따른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등을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합보조금⁶⁾와 같은 보조금의 형태로 교부받으나, 사립유치원 및 사

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사무직원에 대한 보수 및 휴직수당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 유형별 교직원 육아휴직수당 재원 현황>

구분	교원		직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유	국고(국립), 보통교부금(공립)	보통교부금, 자체 재원	국고(국립), 보통교부금(공립)	자체 재원(원비 등)
초		보통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자체 재원		보통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자체 재원
중				
고				
고등 교육 기관*	국고(국립), 지방재정(공립)	자체 재원 (등록금, 기부금 등)	국고(국립), 지방재정(공립)	자체 재원 (등록금, 기부금 등)

자료:교육부

□ 한편,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여 안 제70조의8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휴직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할 때,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고 동등한 처우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측면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그런데, 사립대학 등의 경우는 학생의 수업료, 법인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도 자체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휴직 등

6)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에 대한 비용이 과도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또한, 현재 사립학교와 사무직원의 복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⁷⁾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각 학교의 구체적인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사무직원이 복무에 있어 교원, 국공립 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 측면에서 육아휴직 등의 사유와 휴직기간에 대한 사항을 교원에 준하여 별도 명문화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교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준용하기보다는 학교 유형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 역시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대구교육청은 휴직 외에도 사무직원 처우 등에 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법령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7) 판례번호 2002다51555

- 청암대학교는 지방 전문대의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재정결손으로 휴직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93